

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과정

- 제출일자 : 2020. 11. 13.
- 제출자 : 대구광역시 서구청장
- 회부일자 : 2020. 11. 16.
- 상정일자 : 제22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20. 11. 25.)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 : 기획예산실장 박 해 룡)

가. 제안이유

- 2021년 행정안전부의 기준인력 증원에 따라 급성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역학조사관 인력보강 등 국가정책 및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 조정 (안 제2조)
 - 정원의 총수 : 754명 → 757명 (+3)
 - 집행기관의 정원 : 738명 → 741명 (+3)
- 정원관리 기관별·직급별 정원 조정 (안 제4조 관련 **【별표3】**)
 - 총 계 : 754명 → 757명 (+3)
 - 일반직 계 : 752명 → 755명 (+3)
 - 6급 이하 계 : 703명 → 706명 (+3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 일 회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행정안전부의 기준인력 증원에 따라 급성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역학조사관 1명, 감염병 대응인력 1명, 건축물관리법 제정에 따른 증원 1명으로, 총 3명의 인력보강 등 국가정책 및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,
- 증원으로 인건비의 증가가 예상되나, 기준 인건비 규정을 준수하고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 및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, 향후 급성 감염병의 신속한 대응 등 주민들의 건강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증원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